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1. 제안이유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행사의 구분 (안 제3조제1호 ~ 제4호)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옥외행사”를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 또는 시가”를 각각 “시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재난”으로, “행사개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시”로,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을 “옥외행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행사개최”를 “행사 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신고받은”을 “수립 및 신고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u>옥외행사</u> 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다음 각
		-----		<u>호의 옥외행사</u> -----
		-----		-----.
		-----		-----.
<u><신 설></u>		1. <u>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u>		
		<u>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u>		
		2. <u>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u>		
		<u>기관이 후원하는 행사</u>		
		3. <u>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u>		
		<u>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u>		
		<u>는 행사</u>		
		4. <u>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u>		
		<u>나 불분명한 행사</u>		
제4조(시장의 책무) ① <u>군포시장</u>		제4조(시장의 책무) <u>군포시장(이</u>		
<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u>		<u>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u>		
<u>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u>		<u>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u>		
<u>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u>		<u>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u>		
<u>시행하여야 한다.</u>		<u>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u>		
		<u>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u>		
② <u>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u>		<u>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u>		
<u>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u>		<u>다해야 한다.</u>		
<u>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u>				

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시---

옥외행사장 -----

----- 행사 개시 -----

1. 시가 -----

2. 시가 -----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8. (생략) ③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 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 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1~8. (현행과 같음) ⑤ ----- 수립 및 신고받은----- ----- -----.
--	---